자금조달계획서

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 3서식] <개정 2020.10.27.>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당첨자 본인 성명 기재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당첨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기재
	주소(법인소재지)	당첨자 본인 등본상 주소 기재	(휴대)전화번호	당첨자 본인 연락처 기재

① 자금 조달 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당첨자 본인 명의의 예금(적금 등) 원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당첨자 본인 명의의 주식, 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대금 원		
		④ 증여·상속 가족 등으로 부터 증여 또는 상속 받는 금액 원 [ ] 부부 [ ] 직계존비속 (관계: 부, 모, 자녀 등) [ ] 그밖의 관계 (형제, 자매, 사촌, 지인 등)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보유현금 + 그밖의 자산 등 금액 원 [ ] 보유 현금 [ ] 그 밖의 자산 (종류: 금융상품(펀드/보험), 해지금 등)		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타 부동산 매도액(전세보증금,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등) 본인소유의 부동산 처분 대금 기재 원	⑦ 소계 자기자금 총 합계(① ~ ⑥) 원		
	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[주택담보대출 + 신용대출 + 그밖의 대출] 합계액 원	주택담보대출	금회 취득 주택의 담보대출 실행자금 원	
			신용대출	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 원	
			그 밖의 대출	금회 취득 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 및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밖의 금융기관 대출 원 (대출 종류:)	
		기존 주택 보유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 ] 미보유 [ ] 보유 (건) 금회 취득 주택 제외한 분양권, 입주권 포함			
		⑨ 임대보증금 취득 주택 향후 임대 시 자금(입주계획: 임대체크 시) 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(상환기간 등이 약정 된 자금) 원		
		⑪ 그 밖의 차입금 가족/친인척 등으로 부터 대여하는 자금 원 [ ] 부부 [ ] 직계존비속 (관계: 부, 모, 자녀 등) [ ] 그밖의 관계 (형제, 자매, 사촌, 지인 등)	⑫ 소계 금융기관 대출액 등 총 합계 (⑧ ~ ⑪ 합계액) 원		
	⑬ 합계		자기자금 + 차입금 등, 총 합계 (⑦ + ⑫ 합계액) 원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	총 거래금액	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 원		
		⑮ 계좌이체 금액	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 원		
	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작성금지 원		
	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작성금지 원		
		지급 사유 ( )			

입주 계획	본인 또는 가족입주 체크 [ ] 본인입주 [ ] 본인입주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년 월) 모집공고 상 입주예정일 또는 실제 입주 예정일 기재	[ ] 임대 (전·월세) (⑨ 항목 기재 시 필수 체크)	[ 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 작성금지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당첨자 본인 성명 기재 (서명 또는 인)
인감도장 / 서명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2.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